

어구보종금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어구보종금 환급 신청 정보	피해정보	① 발생 일시	② 피해원인	③ 설치해역(경위도 또는 해구)	
		④ 피해어구 수량	⑤ 어구보종금	⑥ 구입처	
	지급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구보종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어구보종금관리센터 귀하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어구등의 분실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작성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합니다.
- 분실한 어구등을 설치한 해역의 위치를 경위도 또는 해구로 표시하여 작성합니다.
- 분실한 어구등의 수량을 작성합니다.
- 분실한 어구등을 구입할 때 지불한 어구보종금을 작성합니다.
- 분실한 어구등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